

★ ◎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14030
결재일자	2014. 12. 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632호

★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협조	건강관리과장				
	노인청소년과장				
	보육가족과장		보건소장		
	주민생활과장		주민생활국장		

- 복지사업 구비분담분 -

예 비 비 집 행 계 획

2014. 12.



성 동 구

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홍 보 제 목 : ● 중점 홍보사항 - - 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- 복지사업 구비분담분 -

예비비 집행계획

주요 복지사업의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을 확보하여, 중단없는 구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행정 지원을 지속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(예비비의 사용제한), 지방자치법 제129조(예비비)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(예비비의 사용)

II 대상사업

- 사업 수: 주민생활과 등 4개 부서, 긴급복지 등 6개 사업
- 사업개요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사업개요	비고
1	주민생활과	긴급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근거: 긴급복지지원법○ 대상: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○ 내용: 위기가정 발생 시 긴급지원비 신속 지원 등○ 지급예정일: 수시지급	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사업개요	비고
2	보육가족과	보육돌봄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거: 영유아보육법 제4조(책임) 및 제36조 (비용의 보조 등) ○ 대상: 정부지원시설(국공립 및 법인외) 보육교직원 ○ 내용: 보육교직원 개인별 호봉에 따라 지원 비율에 의거 인건비 지원 ○ 지급예정일: 매월 25일 	
3	보육가족과	영유아 보육료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거: 영유아보육법 제4조(책임) 및 제36조 (비용의 보조 등) ○ 대상: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~2세 아동 ○ 내용: 어린이집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영유아 보육료 지원 ○ 지급예정일: 매월 10일 	
4	보육가족과	가정양육 수당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거: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(양육수당) ○ 대상: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집·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(소득무관) ○ 지원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2개월 미만: 월 200천원, 12~24개월 미만: 월 150천원, 24개월 이상: 월 100천원 ○ 지급예정일: 2014. 12. 24. 	
5	노인청소년과	기 초 노령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거: 기초연금법 ○ 대상: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○ 선정기준: 소득인정액 노인단독 87만원, 노인부부 139.2만원 이하 ○ 지급금액: 차등지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독,부부1인수급 20,000원~200,000원 - 부부2인수급 40,000원~320,000원 ○ 지급예정일: 매월 25일 	
6	건강관리과	국 가 예방접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거: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60호) ○ 대상: 만 12세이하 어린이 ○ 내용: 관내 만 12세이하 어린이에게 국가 예방접종비(13종) 지원 ○ 지급예정일: 2014. 12. 4 	

□ 사업별 산출내역

(단위: 천원)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통계목	산출내역	예비비 요구액	비고
	4개 부서	6개 사업	총계		3,464,542	
1	주민생활과	긴급복지	사회보장적 수혜금 (301-01)	지출예정액 51,449천원 (국25,724, 시12,863, 구12,862) - 1,000천원 × 51명 = 51,000천원 - 449천원 × 1명 = 449천원 → 구비 부족액 8,500천원 예비비 요청	8,500	
2	보육가족과	보육돌봄 서비스	사회복지 보조 (307-10)	지출예정액 850,000천원 (국482,726, 시44,066, 구323,208) - 1,830천원×368명=673,440천원 - 750천원×127명=95,250천원 - 1,603천원× 50명=80,150천원 - 1,160천원×1명=1,160천원 → 구비 323,208천원 예비비 요청	323,208	
3	보육가족과	영유아 보육료지원	사회복지 보조 (307-10)	지출예정액 3,097,258천원 (국686,369, 시527,835, 구1,883,054) - 1,548,629천원×2월 = 3,097,258천원 → 구비 1,883,054천원 예비비 요청	1,883,054	
4	보육가족과	가정양육 수당지원	사회보장적 수혜금 (301-01)	지출예정액 1,050,000천원 (시175,702, 구874,298) - 200천원×2,350명 =470,000천원 - 150천원×2,080명 =312,000천원 - 100천원×2,680명 =268,000천원 → 구비 874,298천원 예비비 요청	874,298	
5	노인청소년과	기 초 노령연금	사회보장적 수혜금 (301-01)	지출예정액 3,259,590천원 (국2,281,714, 시488,938, 구488,938) - 179천원×18,210명 = 3,259,590천원 → 구비부족액 251,935천원 예비비 요청	251,935	
6	건강관리과	국 가 예방접종	의료 및 구료비 (307-01)	지출예정액 427,084천원 (국128,125, 시170,069, 구128,890) - 보건소약품비:1,000천원 - 병의원접종비: 423,559천원 (병의원접종비:4,706건/월) - B형간염예방접종: 2,525천원 → 구비부족액 123,547천원 예비비 요청	123,547	

Ⅳ

예비비 집행사유

-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및 연도 중 신규 복지 사업 추진에 따라 추가 지출이 필요한 구비 분담금 예산 반영
- 구민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추가 지출이 필요한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에 대한 예산 확보 필요

Ⅴ

행정 사항

- 예비비 사용 승인: 기획예산과
- 예비비 집행계획 협조 및 사업 추진 철저: 각 부서.

붙임 예비비 지출요구서 4부. 끝.